

2025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교육자료-



월촌초등학교

<http://jb-wolchon.es.kr/>

교장실(063) 547-0433, 교무실(063) 544-0433

행정실(063) 542-9152, FAX(063) 547-3640

(54416) 전라북도 김제시 입석 7길 119

목 차

1. 2025학년도 학사 일정	1
2. 2025학년도 시간 운영 계획	3
3.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4
4. 아동학대 예방	6
5.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8
6. 양성평등	9
7. 약물오남용(흡연·음주·마약류) 예방	10
8.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13
9. 교육활동보호 안내	16
10. 학교폭력예방	18
1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20
12. 정보통신윤리교육	21
1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22
14. 개인정보 보호	24
15. 감염병 예방	25
16. 장애인식개선교육	27
17. 인권교육	28
18. 가정폭력예방교육	29

2025학년도 학사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토	삼일절	1 화	◆상담주간	1 목	근로자의 날	1 일		1 화	◆정보화 교육주간	1 금	
2 일		2 수	식생활교육(1,2)	2 금		2 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주간	2 수		2 토	
3 월	대체공휴일	3 목	식생활교육(3,4)	3 토		3 화		3 목		3 일	
4 화	◆따뜻한 공동체 세움주간 시업식/입학식	4 금	식생활교육(5,6)	4 일		4 수		4 금		4 월	
5 수		5 토		5 월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5 목		5 토		5 화	
6 목		6 일		6 화	대체공휴일	6 금	현충일	6 일		6 수	
7 금		7 월		7 수	화재대피훈련	7 토		7 월		7 목	
8 토		8 화		8 목		8 일		8 화		8 금	
9 일		9 수	농생명체험(5,6)	9 금		9 월		9 수	2학기 다모임 조직	9 토	
10 월		10 목	농생명체험(5,6)	10 토		10 화		10 목		10 일	
11 화		11 금		11 일		11 수	두레	11 금		11 월	
12 수		12 토		12 월	◆수업나눔주간	12 목		12 토		12 화	
13 목		13 일		13 화		13 금		13 일		13 수	
14 금		14 월		14 수	두레	14 토		14 월		14 목	
15 토	리더쉽캠프	15 화		15 목		15 일		15 화		15 금	광복절
16 일		16 수	두레	16 금		16 월	◆평화통일 교육주간 수상안전(3,4)	16 수		16 토	
17 월	◆기초학력 진단주간	17 목		17 토		17 화	수상안전(3,4)	17 목		17 일	
18 화	교육과정설명회	18 금		18 일		18 수	수상안전(3,4)	18 금		18 월	
19 수	두레	19 토		19 월	◆여름독서주간 ◆다꿈교육주간	19 목	수상안전(3,4)	19 토		19 화	
20 목		20 일		20 화		20 금	수상안전(3,4)	20 일		20 수	여름개학식
21 금		21 월	◆창의과학주간	21 수		21 토		21 월		21 목	
22 토		22 화		22 목		22 일		22 화		22 금	
23 일		23 수		23 금	봄체험학습	23 월		23 수		23 토	
24 월		24 목		24 토		24 화	119안전체험(2,5)	24 목		24 일	
25 화		25 금		25 일		25 수	두레/다모임	25 금	여름방학식	25 월	◆따뜻한 공동체 세움주간
26 수	두레/다모임	26 토		26 월		26 목		26 토		26 화	
27 목		27 일		27 화		27 금		27 일		27 수	식생활교육(1,2)
28 금		28 월		28 수	두레/다모임	28 토		28 월		28 목	식생활교육(3,4)
29 토		29 화		29 목	책밤달밤축제	29 일		29 화		29 금	식생활교육(5,6)
30 일		30 수	두레/다모임	30 금	책밤달밤축제	30 월		30 수		30 토	
31 월				31 토				31 목		31 일	
수업일	20	수업일	22	수업일	20	수업일	20	수업일	19	수업일	8
휴일	11	휴일	8	휴일	11	휴일	10	휴일	12	휴일	23
일수	31	일수	30	일수	31	일수	30	일수	31	일수	31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월	◆상담주간	1	수		1	토		1	월	◆정보화 교육주간	1	목	새해첫날	1	일	
2	화		2	목	지평선축제	2	일		2	화		2	금		2	월	
3	수		3	금	개천절	3	월		3	수		3	토		3	화	
4	목		4	토		4	화		4	목		4	일		4	수	
5	금		5	일	추석연휴	5	수		5	금	겨울문화체험	5	월		5	목	
6	토		6	월	추석	6	목		6	토		6	화		6	금	
7	일		7	화	추석연휴	7	금		7	일		7	수		7	토	
8	월		8	수	대체공휴일	8	토		8	월		8	목		8	일	
9	화		9	목	한글날	9	일		9	화		9	금		9	월	
10	수	두레	10	금	재량휴업일	10	월		10	수		10	토		10	화	
11	목		11	토		11	화		11	목		11	일		11	수	
12	금		12	일		12	수	두레/다모임	12	금		12	월		12	목	
13	토		13	월		13	목		13	토		13	화		13	금	
14	일		14	화		14	금		14	일		14	수		14	토	
15	월	◆수업나눔주간	15	수	재난대피훈련	15	토		15	월		15	목		15	일	
16	화		16	목		16	일		16	화		16	금		16	월	
17	수		17	금		17	월	◆영어역량 강화주간	17	수	2026. 1학기 다모임 선거	17	토		17	화	
18	목		18	토		18	화	영어체험학습(4-6)	18	목		18	일		18	수	
19	금		19	일		19	수		19	금		19	월		19	목	
20	토		20	월	◆가을독서주간	20	목		20	토		20	화		20	금	
21	일		21	화	우리고장알기(3,4)	21	금		21	일		21	수		21	토	
22	월		22	수	두레	22	토		22	월		22	목		22	일	
23	화		23	목		23	일		23	화		23	금		23	월	
24	수	두레/다모임	24	금		24	월		24	수		24	토		24	화	
25	목		25	토		25	화		25	목	성탄절	25	일		25	수	
26	금	가을체험학습	26	일		26	수	두레	26	금		26	월		26	목	
27	토		27	월		27	목		27	토		27	화		27	금	
28	일		28	화		28	금	나눔장터	28	일		28	수		28	토	
29	월		29	수	두레/다모임	29	토		29	월		29	목				
30	화		30	목		30	일		30	화		30	금				
			31	금	동아리 한마당				31	수	종업식/졸업식	31	토				
수업일	22	수업일	17	수업일	20	수업일	22	수업일	0	수업일	0	수업일	0	수업일	0	수업일	0
휴일	8	휴일	14	휴일	10	휴일	9	휴일	31	휴일	28	휴일	28	휴일	28	휴일	28
일수	30	일수	31	일수	30	일수	31	일수	31	일수	28	일수	31	일수	31	일수	28

2025학년도 시간 운영 계획

시정	구분	요일	월	화	수	목	금
08:30~09:00	아침활동		아침 자율 활동 (아침독서 10분)				
09:00~09:40	1교시		교과 활동				
09:45~10:25	2교시		교과 활동				
10:25~10:55	중간놀이		중간놀이 활동 및 스포츠클럽활동				
10:55~11:35	3교시		교과 활동				
11:40~12:20	4교시		교과 활동				
12:20~13:20	점심시간		점심식사				
13:20~14:00	5교시		교과 활동				
14:10~14:50	6교시		교과 활동				
15:00~15:40	늘봄		늘봄 교육활동				
15:50~16:30	늘봄		늘봄 교육활동				

<늘봄 프로그램>

시간	학년	월						화						수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5교시 1:20~2:00		교과	드론 축구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전래 놀이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돌봄	뉴스 포츠	교과	교과
6교시 2:10~2:50		돌봄	드론 축구	오카 리나	교과	교과	교과	전래 놀이	놀이 수학	교과	영어	교과	교과	책 놀이	키즈 역사 놀이	영어	돌봄	돌봄	뉴스 포츠
7교시 3:00~3:40		음악 놀이	돌봄	돌봄	오카 리나	영어	돌봄	놀이 수학	돌봄	영어	컴퓨터 코딩	돌봄	난타	돌봄	돌봄	돌봄	영어	뉴스 포츠	돌봄
8교시 3:50~4:30		음악놀이 - 합창		돌봄	돌봄	영어	돌봄	돌봄	돌봄	컴퓨터 코딩	난타	돌봄	뉴스포츠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시간	학년	목						금					
		1	2	3	4	5	6	1	2	3	4	5	6
5교시 1:20~2:00		모두다 꽃이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뉴스포츠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6교시 2:10~2:50		돌봄	음악놀이	오카 리나	돌봄	교과	교과	놀이영어	뉴스포츠	교과	교과	교과	교과
7교시 3:00~3:40		음악놀이	돌봄	컴퓨터 코딩	오카 리나	난타	돌봄	돌봄	놀이영어	뉴스포츠	돌봄	돌봄	영어
8교시 3:50~4:30		음악놀이 - 합창		컴퓨터 코딩	난타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돌봄	영어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1. 공교육정상화법

◆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 3. 11. 제정, 2022. 7. 21. 개정

◆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선행교육 판단 기준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2.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Q&A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초6과 중1, 중3과 고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가정폭력 피해자가 18세 이상의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적용되고,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우선 적용함

◆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내용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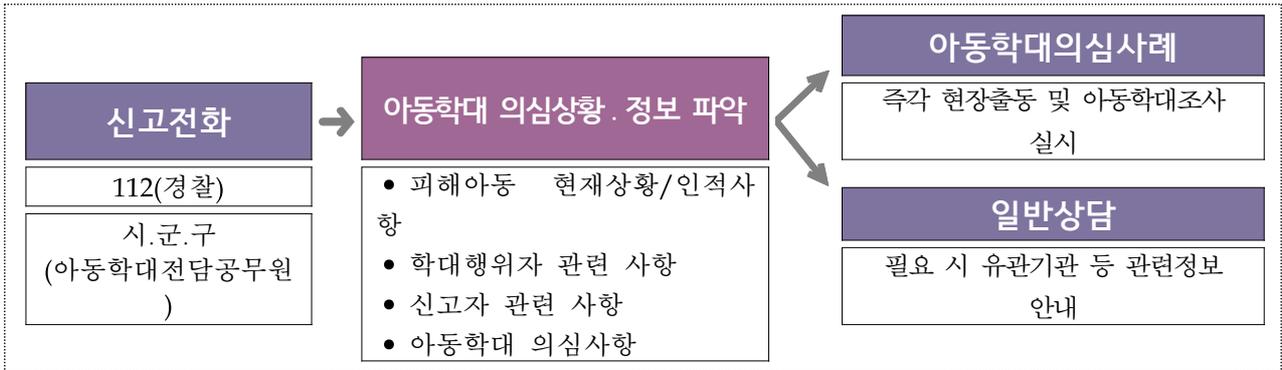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라.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



나. 아동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라.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 모바일앱(아이지킴콜 앱)
- 보건복지콜센터 129-6번(아동학대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동부: 042-254-6790, 서부: 042-716-2020)

- ※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안(교사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절차 시행
-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 확인
 - (시교육청) 교사 대상 아동학대 사안 관련 교육감 의견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

4. 징계권 폐지 안내

◆ 징계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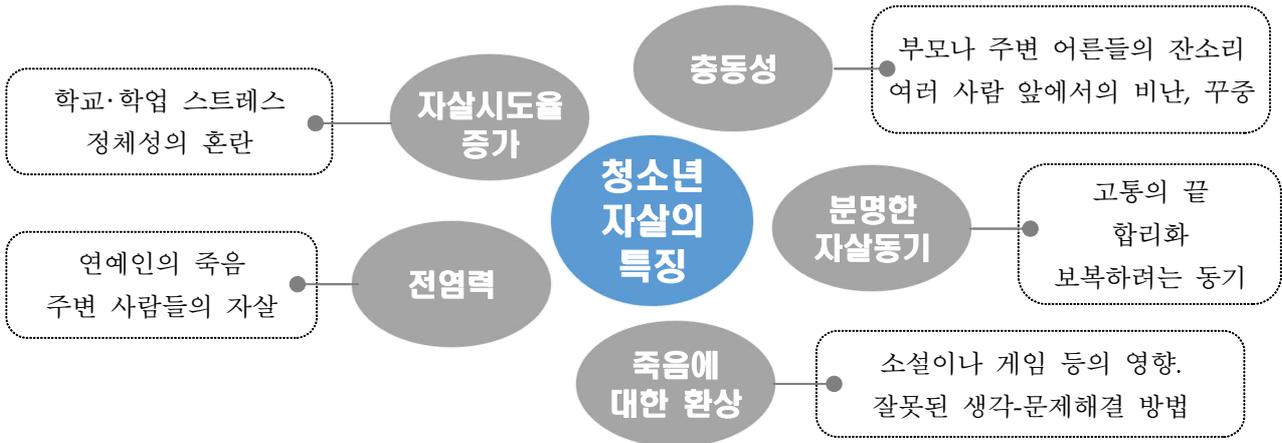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

◆ 징계권 폐지

- 징계권은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2.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 평소와 달리 숙제를 잘 안 해온다.
- 수업시간에 자주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 무단 지각, 조퇴, 결석이 많다.
-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 표정이 어둡고 울적해 보인다.
- 갑자기 살이 너무 빠져 보이거나 썩 보인다.
-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지 않다.
-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비행 행동을 한다.
- 최근 가정문제(부모 이혼, 사별, 경제적 문제 등) 또는 학교 문제(학교 폭력, 따돌림)를 경험했다.
- 최근 친구, 지인 등의 자살 사망을 경험했다.*
- 일기, 노트, SNS 등에 슬픈(죽음 관련)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 '죽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등 자살과 관련된 말을 한다.*
- 자해,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

-
- 최근 3개월 이내에 3개 이상 보이는 경우 담당 교사에게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함.
 - '*'항목은 1개 일지라도 교내 담당 교사에게 연계

생명의 전화
www.lifeline.or.kr
☎ **1588-9191**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www.suicideprevention.or.kr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다 들어줄 개」 문자상담
☎ **1661-5004**

양성평등교육

1. 성인지 감수성

가.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

- 성인지 감수성은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의 의식으로 의식은 인간의 행동과 언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 성평등 지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105위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소극적 의미로는 성 차별이나 성 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에 대한 ‘인지 능력’ 혹은 ‘관심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적극적 의미는 성 차별이나 성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을 포함합니다.

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법

-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성 고정관념을 성찰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일상 속에서 성 불평등 단어의 인식 및 개선 노력을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태도를 갖습니다.
-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성평등 관련 책, 기사, 연수, 대화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합니다.
-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불리하지 않은 지 각 성의 입장에서 함께 판단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합니다.
-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여성 혐오와 차별중심 접근을 극복, 각 성의 입장에서 보는 균형잡힌 시선을 갖는 노력을 합니다.

2.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 의식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가 낮은 사람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가 높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라,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 - 집안일과 육아 등에서 남성,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해 다소 둔감, 부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서도 어느 한쪽의 권한을 더 높게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와 육아 등 공동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 요리, 빨래, 청소와 아이 돌보기 등의 활동을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 - 가정 내 성 차이를 인정, 부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서도 평등성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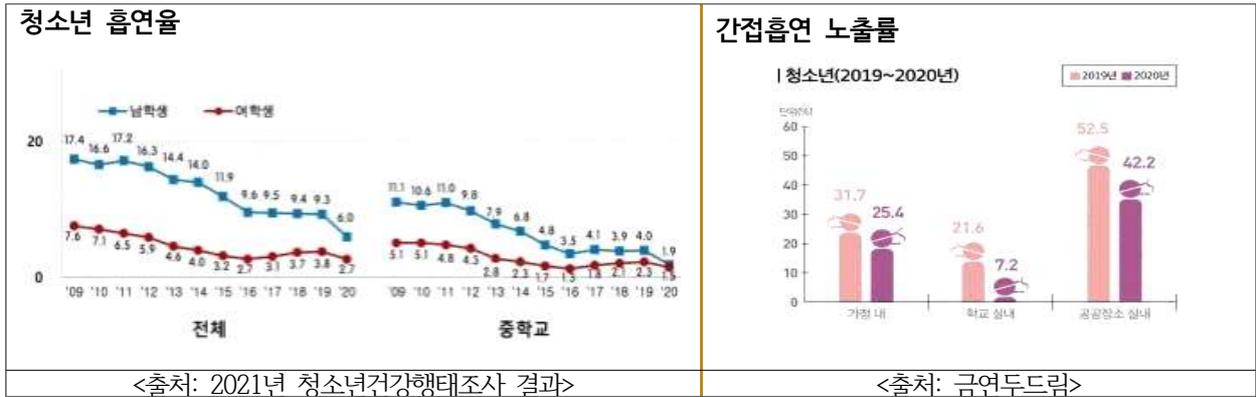
3. 가정에서의 성 평등 실천 방법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진로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약물오남용(흡연·음주·마약류) 예방

1. 청소년 흡연

○ 청소년 흡연의 실태



○ 담배,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해롭다.

- 1)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니코틴에 더 민감하고 의존성도 빨리 생기며, 청소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 최근 담배회사들이 내세우는 '위험감소', '냄새 없는', '연기 없는', '깨끗한 대안' 등의 담배 제품은 교묘한 담배 산업전략의 예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 3)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 시기의 흡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청소년 흡연의 특성

- 가. 흡연시작시기 : 중3-고1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 (최근 연령이 점점 낮아짐)
- 나. 흡연량 : 남학생의 약 80%, 여학생의 80%정도가 하루 10개피 미만
- 다. 가족흡연 :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 라. 학교생활 : 불만족 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마.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 부모가 자신의 흡연 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바. 부모의 양육태도 : 거부적-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에 비교할 때) 흡연을 많이 합니다.
- 사. 정서 : 불안감이 높고 자아 존중도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2. 가정의 역할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간접흡연과 3차 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관찰하시고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 3차 흡연을 아시나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흡연을 하고 난 뒤 흡연자의 **몸이나 섬유(옷, 벽지, 카펫 등)에 배인** 담배유해물질이 스며져 나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 1544-9030

3.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친구에게 'NO!'라고 말하기

담배나 술, 약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웃으며 놀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담배나 술, 약물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말들을 연습해 봅시다.

- ◆ 고마워. 그러나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 ◆속이 메스꺼려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좋겠어.
- ◆ 난 장염 치료중이어서 술은 마실 수 없어. ◆ 폐가 약해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심하게 해.
- ◆ 난 오렌지쥬스가 좋아. 쥬스 마실래. ◆ 노래나 책 등으로 화제를 바꾼다.
- ◆ 우리 농구하러 가지 않을래? ◆ 난 지금 가야 해. 약속이 있어 등.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중독 및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흡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마약류 예방

○ 마약류란?

느낌, 생각,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장기간 사용 시 의존성, 금단증상, 내성을 갖는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 마약류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 호흡억제, 과민성, 졸음, 구역질, 근육통, 오한, 변비, 환각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 구토, 설사, 우울, 자해, 기억력 감퇴	
ADHD 치료제	부작용	· 수면장애, 망상, 혈압 상승, 조울증, 공격성향, 학습효과 저해	



○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해 기억해야 할 5가지**

- ① 친구의 권유나 유혹에는 단호히 거절하기
- ②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 문구에 관심 가지지 않기
- ③ 관련 광고나 SNS 적극 차단하기
- ④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 음식은 절대 먹지 않기
- ⑤ 온라인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약은 사지도, 쓰지도 말기

○ **마약류 사용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전문상담지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 02-6929-3192 (전북) 080-232-5112
☎전국 상담 대표번호 1899-0893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1. 디지털 성폭력이란?

○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 1) 성폭력: 권력 또는 힘의 우위(물리적, 협박, 위계, 위력 등)를 이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2)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매체(SNS, 카메라,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주장적 표현

- 1) 성적 자기 결정권: '내 몸의 주인은 나'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 2) 자기 주장적 표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한다.

2.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 오프라인 성폭력: 불법촬영

- 1) 동의하지 않은 사진 촬영, 소지
- 2)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상대의 요청에도 삭제하지 않음
- 3) 소지한 이미지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
- 4) 개인의 이미지를 강제로 획득

○ 온라인 성폭력: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재유포/제3자 유포

- 1) 온라인상에 개인정보 또는 이미지 유포
- 2) 계속 성적인 사진 전송을 강요

○ 온라인 스토킹: 사이버상 괴롭힘

- 1) 해킹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계정 해킹
- 2) 협박 전화 또는 계속되는 원치 않는 문자

3.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 가해 행위의 집단성, 시공간 제약 없는 가해: 어디서든 누구든 촬영하고 업로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대다수가 방관자 또는 가담자가 되기 쉬움
- 빠른 전파성, 피해기록의 연속성: 다양한 플랫폼, 제목 변경, 편집 등으로 유통 범위 무한 확장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음
- 익명성, 비대면성: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을 약화시켜 명백한 폭력이 놀이처럼 되어 버림

4. 디지털 성폭력 예방 포스터

사이버성폭력 예방

사이버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몸 사진·동영상 등
요구·협박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하거나 유포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합성·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사이버성폭력 예방

조심해야 할 것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

이렇게 행동해요

만남 요구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 영상 전송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 / 스템'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

도움을 요청해요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경찰 (112·117 / 앱: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 학교전담경찰관)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을 받고 싶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1366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5.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지면 좋은 자세

- (1)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2)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4)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5)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6)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7)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8)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9)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6. 자녀의 이성교제, 어떻게 해야할까?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생리적 특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칫 충동적이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야기되기도 하므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에 대비하세요.

- 내 아이도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늘 필요합니다.
- 드라마나 영화를 본 후에 살짝 물어봄으로써 자녀의 이성관을 파악해 둡니다.

(2) 일단 고마워하세요.

- 자녀가 이성교제 사실을 밝히면 일단 화내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 먼저 자녀의 솔직한 태도에 대하여 “그런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 기분이 참 좋구나” 라고 고마움을 표현해 주세요.

(3)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들어주세요.

-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 자녀가 말하는 동안은 경청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전해주세요.

(4) 환경과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 건전하고 도움이 되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 이성교제를 계속하기 위한 몇 가지 합의사항을 자녀와 정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 해주세요.

(5) 명령 보다는 생각이나 그로 인한 감정을 이야기 해주세요.

- 정해놓은 약속을 어길 때는 자녀의 행동을 질책하기보단 “밤에 늦게 들어오면 혹시 이성 친구와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계속 걱정이 되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처럼 부모의 명령이 담긴 말보다 ‘생각’과 ‘감정’을 전달해주세요.

(6) 건전한 부모상을 확립해주세요.

- 자녀가 남성과 여성을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여 무의식 속에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활동보호 안내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9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교원지위법」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Q&A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유형의 예

구분	질문	답변
폭행	실제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위협적인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교원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은 어떤 문제가 되나요?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다.", "죽여버린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은 교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협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	교원에 대한 허위 제보나 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원에 대한 허위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보도되게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사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	교사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나요?	정당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반복적 요구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교원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교원이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방식이나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나요?	건설적인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시험범위를 줄여라.", "체육수업 대신 자습을 시켜라."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원과의 상호작용과 배려, 소통 방법

1. 문의는 근무시간 내에, 상담은 약속 시간을 정해, 교육활동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겨주세요.
2. 민원 제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상담해주세요.
3.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습관, 관계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며 교육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주세요.
4.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은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관관계임을 이해하고 서로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5. 학생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학교폭력예방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 피해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6. 멍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10.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11.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2. 따돌림 당한 친구 사례를 얘기하며, 그런 경우 부모로서의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한다.

3. 가정 내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방안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2.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얘기한다.4.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할 예절 등을 교육한다.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7.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 학교폭력 신고·상담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범죄 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11.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준다. |
|--|--|

4.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1.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준다.

“그런 일은 크면서 겪을 수 있어.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녀의 상황을 흘려듣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엄마가 도와줄게.” 등의 대화를 통해 힘을 실어준다.

2. 피·가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집단폭행 및 따돌림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가 겪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한다.

3.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Wee센터(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1.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기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대 행동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 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나.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 결석 인정조건

- 1) 관련서류 제출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보유자는 사전(학년 초 1회)에 전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미세먼지와의 질환과의 관련성 명시)를 학교에 제출
- 2) 고농도 미세먼지 시 :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통해 확인
- 3) 사전연락 :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1교시 수업 시작 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정보통신윤리교육

1.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마.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2.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라.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3.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나.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라.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4.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1. 스마트폰 과의존 정의

-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 현저성: 일상생활의 스마트폰 이용이 다른 활동에 비해 현저하게 많고 스마트폰 이용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
 - 조절실패: 자신이 세운 이용목표를 스스로의 의지로 지키기 어려운 것
 -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 이용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는 것

2.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문제점

- 우뇌증후군
 - 스마트폰 동영상은 자뇌만을 강하게 자극하여 우뇌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우뇌가 발달되어야하는 직관적 사고기에 자뇌만 발달하여 뇌의 균형이 떨어짐
 - 충동성 과잉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팝콘브레인
 -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할 경우 발생
 -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는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뇌가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정보에만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현실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
 -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에 익숙해져 정적인 활동인 독서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학습능력이 저해됨
 - 자극만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자극>정리>표현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진행하지 못함.
- 언어 발달, 정서 인지 발달에 악영향
 - 보통 단방향으로 이루어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양방향 소통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듣기', '말하기'를 통한 언어 발달의 기회가 감소
 -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아이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3.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가이드

- 교육용 '앱'보다는 '책'을 읽어주세요.
 - 미래교육을 위한 '앱'도 필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 보세요.
- 자녀와 보호자의 사용습관을 함께 점검해보세요.

-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사용습관을 확인해보세요.
-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주세요.
 - 자녀가 스마트폰을 무엇을 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살펴봐 주세요.
 -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시고 설명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 함께 정한 규칙을 가족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자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4.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1. 사이버 안심존 : <https://ss.moiba.or.kr/index.do>
 - 사이버 안심존 프로그램(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점검하고 이용 시간을 관리, 지도하는 서비스)와 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수신되는 사이버언어 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2. 스마트쉼센터 : <https://www.iapc.or.kr/>
 -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을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개인정보는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 생활 실천 수칙 7가지



감염병 예방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약 5~7일)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코로나19	코물, 기침,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등	5일간 등교중지 권고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진단명과 격리기간 명시 필수)

3. 감염병 전파 방지

-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감염병예방의 첫단계는 올바른 손씻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손 씻기 지도해주세요.(1830 손 씻기)**

	<p>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p>
	<p>2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p>
	<p>3단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p>
	<p>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p>
	<p>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줍니다.</p>
	<p>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p>

장애인식개선교육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나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23. 1. 28.] [법률 제 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장 제1조(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차별금지



[제2절] 제13조 차별금지, 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수업이나 수학 여행 등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되며, 각종 편의(이동 및 접근에 대한 편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대여, 시각장애인 보조견 배치 등)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절] 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대피함에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절]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장애는 차별의 대상이 아닌 공감과 존중의 대상입니다.

○ [제3장]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 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 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면 안 됩니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3. 나-전달법 [I-Message]

• 나-전달법(I-Message)으로 대화하세요.

-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 나-전달법(I-Message)의 3가지 요소

- 사실 :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 영향 :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느낌 :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는 거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사실)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영향)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 나-전달법(I-Message)을 긍정적 감정 표현에도 사용하세요.

- 네가 미술 시간에 어지럽혀 놓은 물감을 정리해 놓으니(사실)
- 책상이 깨끗해져서(영향)
- 내가 기분이 참 좋아(느낌)

가정폭력 예방 교육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와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2.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됩니다.

3. 가정폭력의 종류

신체적인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함.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 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함.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는 경우,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해당하며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역시 포함됨.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함.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 사용 금지 행위
성적인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함. <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함.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4.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관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 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제1호 및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	전 화	홈페이지
법무부 인권구조과	☎ 02-2110-3263	http://www.moj.go.kr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 02-3480-2303~5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 ☎ 1577-2584	http://www.spo.go.kr
경찰청 민원센터	국번없이 ☎ 182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 02-3150-2335	http://www.police.go.kr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 1577-1295	http://www.kcva.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http://www.klac.or.kr
경찰서 민원실	각 민원실 또는 대표번호 ☎ 112	http://www.police.go.kr

